

의안
번호

39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2.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일준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396호

다. 제출일자 : 2024. 11. 6.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가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조정(안 제6조)
- 나. 주민자치학교 사전교육 및 이수 효력기간 정비(안 제7조제1항 및 현행 제10조제3항 삭제)
- 다. 위원의 위촉 정비(안 제9조제1항)
- 라. 공개모집 신규 신청자 위원 우선 선정(안 제10조제2항)
- 마. 자치회장의 자격 및 직무대행 등 정비(안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신설)
- 바. 사무국, 자원봉사자 삭제(안 제15조)
- 사. 주민총회 개최 시기 정비(안 제19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2.
 - 의 견 : 의견 있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주민 조직으로,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년 「지방분권법」을 거쳐 2023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대체됨)에 근거를 두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우리 구는 2017년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구로 선정되어 조례 제정과 함께 처음 도입하였음.

□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조정 및 단서 조항 삭제

- 안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규정은 ‘50명 이내’에서 구성하고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정원의 하한선을 정하고 기존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임.

이는 현재 동별 주민자치회 정원을 일률적으로 50명으로 규정함에 따라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우려되어 동별 인구 편차 등의 지역 여건과 동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동별 주민자치회 정원 및 현원〉

행정기관	인구수(명)	정원(명)	현원(명)	행정기관	인구수(명)	정원(명)	현원(명)
성북동	15,897	50	50	정릉제4동	23,950	50	50
삼선동	21,950	50	42	길음제1동	35,472	55	52
동선동	15,081	50	48	길음제2동	21,400	50	50
돈암1동	14,063	50	50	종 암 동	37,188	58	58
돈암2동	23,302	50	44	월곡제1동	25,246	50	49
안암동	15,264	50	49	월곡제2동	18,774	50	47
보문동	16,114	50	47	장위제1동	23,162	50	50
정릉1동	17,657	50	43	장위제2동	12,892	50	43
정릉2동	22,256	50	48	장위제3동	15,491	50	46
정릉3동	14,732	50	50	석 관 동	33,548	55	55

※ 출처 : 자치행정과(2024.10. 기준)

나) 신규위원 사전이수교육 삭제 및 이수 유효기간 정비

- 안 제7조(위원의 자격)제1항은 위원회의 자격 중 사전이수교육 및 교육의 유효기간을 정비한 것으로, 현행 규정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기 전 6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사전이수교육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위원 선정 후 2시간 이상으로 기본 이수시간을 단축하고 이수 유효기간은 4년으로 변경한 것임.

사전이수 교육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자치활동에 부담을 느끼거나 동기를 상실해, 위원으로 위촉 후 활동을 중단할 위험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전원 추천방식으로 위원을 선출하므로 신규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6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위원자격이 부여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도 있으므로 **사전교육이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제한한하고 판단된다면 이를 변경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므로 위촉 후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사료 됨.

- 안 제7조제1항 단서는 주민자치교육 이수 유효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한 것으로 이는 생업에 종사하며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잦은 회의와 반복적인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서울시 주민자치회 자치구별 교육 유효기간 현황 조례 비교(2024.11.12 기준) >

구분	조건	해당 자치구	비고
교육 유효기간	사전 4시간 이상	▶ 동대문 - 2년 ▶ 강북	
	사전 6시간	은평 - 임기 내	
	사전 6시간 이상	▶ 성북 , 광진, 노원 - 2년 ▶ 금천, 구로, 서대문, 성동 - 없음	
	사전 6시간 + 사후 2시간 총 8시간 이상	송파, 용산, 중랑 - 2년	서울시 표준 조례(2020)
	교육시간 미규정	종로	* 종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전의무교육 없음	강동, 강서, 관악, 도봉, 동작, 영등포, 양천(사후 2시간 이상)	동작: 2년 삭제('23.11.9. 시행) 양천: 2년 삭제('23.12.14. 시행) 영등포: 2년 삭제('23.4.13. 시행)

다) 위원 위촉 정비

- 안 제9조(위원의 위촉)제1항제2호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 주민조직에서 추천을 받을 경우 특정 단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후단을 신설함. 이는 동 내 특정 단체 추천자에 대한 위원 수 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단체의 위원 수가 많을 경우 회장 및 임원 선출과 조직 운영 등에 편향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라) 공개모집 신규 신청자 우선 선정

- 안 제10조(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규정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임 임기를 마친 위원도 다시 신규 위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이 경우 연임 임기가 끝난 기존 위원도 계속해서 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임.

이는 자치회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주민의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규 위원을 우선 선정 후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임이 끝난 위원을 신규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안 제10조제3항은 임기 중 2시간 보수교육의 요건을 삭제한 것으로, 이는 새로 위촉하는 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 의무가 삭제된 제7조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마) 자치회장의 자격 및 직무대행 등 정비

- 안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제1항은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자격 요건을 정비한 것으로 현행 규정에서는 자치회장과 부회장을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 중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위원으로 요건을 강화한 것임.

이는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애郷심을 가진 사람을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하고자 하는 취지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행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¹⁾의 위원의 자격과 비례하여서는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 됨.

- 안 제14조제4항은 자치회장과 부회장 궐위 시 직무대행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현행 규정은 자치회장 1명과 2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부회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회장 선출 전까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도록 하고 있지만, 부회장이 2명인 경우와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직무대행 순서의 부재로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장자 순으로 대행체계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1)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안 제14조제5항은 자치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회 특성상 위원의 임기가 기수별로 구분되므로 후임 자치회장이 취임한 후 남은 기간(6개월 미만)만 수행하게 될 경우, 그 이후 자치회장이 되려는 사람의 피선거권이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선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회장도 본 개정 규정에 따라 연임에 관한 적용례를 두도록 하고 있음

바) 사무국 설치와 자원봉사자 활용 근거 삭제

- 안 제15조(간사 또 사무국)제1항제2호제3호는 사무국 설치와 자원봉사자 활용 근거를 삭제한 것으로 이는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사무국에 관한 규정이 사문화되어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자원봉사자사는 현재 활용하는 동이 없어 삭제한 것으로 보임.

아) 간사 실비를 활동비로 변경

- 안 제15조(간사 또 사무국)제4항은 간사 실비를 활동비로 변경한 것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의 핵심 조직으로, 간사는 이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과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기존의 실비지급 방식으로는 간사의 활동이 단기적이거나 임시적인 성격을 띠는 가능성이 높아, 주민자치회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어 간사 활동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사) 주민총회 개최 시기 정비

- 안 제19조(주민총회)제2항은 주민총회 개최 시기를 정비한 것으로 현행 규정에서는 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총회 운영에 필요 사항은 운영세칙 정하도록 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연 1회 당해 주민자치계획이 완료된 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정비한 것으로, 현재 주민총회는 6~7월 경에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숙지와 운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음연도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위원회 정원조정, 사전이수 교육 및 이수 효력 기간, 주민총회 개최 시기, 신규 위원 우선 선정, 위원의 위촉 방법 등 주민자치회가 설치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현행 제도의 현실화하고 내실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주민 의견과 부서의 의견에서는 개정안의 개정방향과 내용 대부분에 **현행을 유지하는** 목소리도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 사료 됨.